

부동산소유권 **이전등기** 등에 관한 **특별조치법** 시행 안내


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란

- 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



적용범위 및 대상은

- ✔ 1995. 6. 30이전에 매매·증여·교환·공유물분할 등의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
- ✔ 상속받은 부동산,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



확인서 발급신청 및 처리는

- ✔ **시행기간** : 2020. 8. 5. ~ 2022. 8. 4.(2년간)
 - 2022. 8. 4.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, 이후 처리기간내 처리
 - 등기신청 : 2023. 2. 6.(월)까지 가능
- ✔ **적용대상** : 토지와 건물
- ✔ **신청방법** : 법정리별 4명의 보증인과 토지소재지에 위촉된 변호사·법무사중 1인, 총 5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첨부
- ✔ **제출서류** :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, 보증서 1부, 미등기부동산은 미등기사실증명서 1부,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(귀속부동산 및 국·공유부동산에 한함) 1부 등
- ✔ **제출처** : 토지 →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팀, 건물 → 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

처리절차



※ 확인서 발급신청한 토지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담당부서의 안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, 토지분할허가의 대상일 경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.



영광군

부동산소유권 **이전등기** 등에 관한 **특별조치법** 시행 안내


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란

- ✓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



적용범위 및 대상은

- ✓ 1995. 6. 30이전에 매매·증여·교환·공유물분할 등의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
- ✓ 상속받은 부동산,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



확인서 발급신청 및 처리는

- ✓ **시행기간** : 2020. 8. 5. ~ 2022. 8. 4.(2년간)
 - 2022. 8. 4.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, 이후 처리기간내 처리
 - 등기신청 : 2023. 2. 6.(월)까지 가능
- ✓ **적용대상** : 토지와 건물
- ✓ **신청방법** : 법정리별 4명의 보증인과 토지소재지에 위촉된 변호사·법무사중 1인, 총 5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첨부
- ✓ **제출서류** :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, 보증서 1부, 미등기부동산은 미등기사실증명서 1부,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(귀속부동산 및 국·공유부동산에 한함) 1부 등
- ✓ **제출처** : 토지 →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팀, 건물 → 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

처리절차



※ 확인서 발급신청한 토지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담당부서의 안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, 토지분할허가의 대상일 경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.



영광군